2020.4. 6. / 1일간

제31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

집 회 결 과

장 성 군 의 회

심 사 결 과

의 안 명	심사결과
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	원안가결
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	원안가결
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
주 요 내 용

1.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▪ **제출일자** : 2020. 4. 2.

▪ **제 안 자** : 장성군수

▪ **주요내용**

○ 규　　모 : 457,769,304천원

○ 회 계 별

- 일반회계 : 446,477,106천원

- 특별회계 : 11,292,198천원

○ **예산안 내역**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감
합　　계	457,769,304	449,039,419	8,729,885
일반회계	446,477,106	437,747,221	8,729,885
특별회계	11,292,198	11,292,198	

▪ **의결결과** : 원안가결

2.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**발의일자** : 2020. 4. 2.

▪ **발 의 자**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
▪ **제안이유**

○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기본적 생활

▪ **주요내용**

○ **지원대상자 개정(안 제2조 제7호)**

- (현행) : 수해, 화재, 질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
- (개정) : 수해, 화재, 질병, **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**

○ **지원내용 신설(안 제6조 제14호)**

- 제2조 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3.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▪ **제출일자** : 2020. 4. 2.

▪ **제 안 자** : 장성군수(재무과장)

▪ **제안이유**

○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2020. 2. 23.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, 이에 따른 우리 군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세(군세)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함.

▪ **주요내용**

○ 감면대상자

가. 착한 임대인 (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)

나.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

○ 감면 세목 및 내용 : 재산세(지방교육세 포함)

가.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및 임대·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.(다만, 3개월 미만 임

대료 인하 시 3개월로 역산 후 그 비율만큼 재산세 경감)

나. 2019년 기준 수출·수입액 비중이 50% 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하여 전년동기(1/4분기) 대비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아래의 감면률에 따라 2020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.

《 감면율 》

· 매출액 20% 이상 ~ 30% 미만 감소 : 재산세 25% 감면
· 매출액 30% 이상 ~ 50% 미만 감소 : 재산세 50% 감면
· 매출액 50% 이상 감소 : 재산세 75% 감면

○ 기타사항

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 후 이를 환급한다.

▪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

4.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▪ **제출일자** : 2020. 4. 2.

▪ **제 안 자**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과장)

▪ **제안이유**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0. 3. 30.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

○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의 장성사랑상품권 지급과 상품권 특별할인(10%) 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품권의 유통규모 확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와 환전한도 조정, 부정유통 방지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▪ **주요내용**

○ **대금의 지급 확대(안 제14조제3항)**

- (현행) : 가맹점의 월간 한도액은 월 5백만원으로 한다.
- (개정) :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. 다만,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.

○ **구매한도 확대(안 제15조제2항)**

- (현행) :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,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(개정) :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,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재난 등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

○ **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신설(안 제21조)**

■ **의결결과 : 원안가결**